

토지공급기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공급 대상을 정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금액 명확화 및 기타 준용 문구 오류 등을 정정하고자 함
- 나.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임대 리츠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공사 보유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가능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 중 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삭제(안 제14조제1호)
- 나.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안 제14조제5호)
- 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은 “매각가격의 100분 5 이하”로 본다 라는 준용문구 오류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은 “매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본다 로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1조)
- 라. “공고기한”을 “공고기간”으로 함(안 제21조)
- 마. 공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뿐 아니라 계약보증금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함(안 제28조제4항)

토지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공급기준 일부개정안

제14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 중 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계약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17조제2항 과 제21조 중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은 “매각가격의 100분의 5 이하”로 본다. 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은 “매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본다. 로 한다.

제21조 중 “공고기한”을 “공고기간”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2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를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4조(계약상대방 또는 목적 등에 따른 수의계약) 1. <u>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 중 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계약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u> 2. ~ 4. (생략)	제14조(계약상대방 또는 목적 등에 따른 수의계약) 1. <u>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설>	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u> <u>가. 국가</u> <u>나. 지방자치단체</u> <u>다. 공사</u> <u>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u>	- 정부의 공공임대 리츠 확대 정책을 반영
제17조(수의계약의 절차 등) ① (생략)	제17조(수의계약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현행	개정안	사유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 ③ (생략)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u>제2항의 경우에는</u>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⑤ ~ ⑦ (생략)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2항의 경우에는</u> <u>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u>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지급금액 명확화